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A1) 일선 산불현장 대응 산불위험 및 행동 정보 분석·평가	임업연구사	2	05 김 ○ 현 06 유 ○ 민
(A2) 산사태 예측 및 피해저감 연구		1	04 이 ○ 호
(B1)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위험평가·분석 및 예측기술 연구		2	01 허 ○ 정 13 노 ○ 우
(B2) 목재산업 생산공정 효율화 연구		1	01 권 ○ 룰
(C1) 목질계 셀룰로오스 활용 첨단 신소재 개발 연구		1	02 김 ○ 구
(C2)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연구		1	10 류 ○ 운
(D1) 기후변화 대응 난·아열대 산림 보전· 관리 연구		1	13 박 ○ 민
(D2) 산림약용자원 기능성 및 생산성 연구		2	10 원 ○ 재 19 윤 ○ 배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임업연구사 최종합격자 11명

○ 제출기간 : '26. 8. 18.(화) ~ 8. 26.(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제출처 : (우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제거 후 순서대로 제출)

① 임용동의서 1부(서식1)

②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③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④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서식2, 2-1, 2-2)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마약류 6종 검사 포함) 발급 관련하여 [참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안내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⑤ 반명합판(3cm×4cm) 사진 1매 (사진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 cjh3641@korea.kr)

3.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임용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제출기간 내에 상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 <서식3>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일 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지원과(☎ 02-961-2513)

임용 동의서

- 응시구분 : 2026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응시번호 : _____
 ▪ 성 명 : _____ ▪ 생 년 월 일 : _____
 ▪ 주 소 : (우편번호 _____) _____
 ▪ 전화번호 : 일반전화 _____ - _____ - _____ 휴대전화 _____ - _____ - _____

위 본인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십시오.

※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십시오.

참 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 서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지정 서식)

※ 관련근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 (검진기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검진기관 찾기

(마약류 검사 실시 기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공고 중 마약류 검사 가능 의료기관 참고

※ 검진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3. 신체검사 수검 및 서류 확인 유의사항 [필독]

- 반드시 마약류 6종(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검사 결과가 포함된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신체검사 항목의 유효기간(1년)이 남은 경우 일반 신체검사 항목의 판정은 유효하므로,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전 신체검사서에 본인의 증명사진(반명함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진 위에 의료기관 장의 직인(압인 또는 계인)이 누락 없이 찍혀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마약류 검사 결과 도출까지 통상 3일~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 직후 신속히 검진기관 방문 및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판정 보류'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신체검사 결과 '합격'이 아닌 '판정 보류' 등이 기재된 경우, 재신체검사는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의 정밀검사를 거쳐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약류 1차 검사 양성 등 신체검사 판정 보류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채용 담당 부서로 소명 시 신체검사서의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함. 단, 신체검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등록 서류는 반드시 당초 공고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

<서식2>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2-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전문 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3.5cm × 4.5cm)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압인 또는 계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 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한
년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를]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 직명	④ 응시 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

※ 압인 또는 계인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이
아
그

검사자(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합 격 []불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이
의
의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서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
-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대상 질환, 사용 목적,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용 포기서

- 시험구분 : 2026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괄호 안 **포기사유** 예시 :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십시오.